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10일 10시 31분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

희망복지지원단

사회복지관

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노숙인시설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

긴급복지지원제도

위기가구사례관리



긴급지원 제도?

갑작스러운 위기사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긴급지원 대상

- 갑작스러운 위기사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- 위기사유
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
 -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- 주소득자와 이혼, 단전된 때,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가구원 1명 한정)의 실직 및 휴·폐업,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(※ 주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), 출소(구금 1개월 이상, 6개월 이내 출소)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등

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,458천원, 2인가구 2,445천원)이하 - 의료지원,주거지원,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,교육지원,연료비지원,해산·장제비지원, 전기요금지원 부분
- 재산기준 : 15,2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6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)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원/월	1,458,609	2,445,063	3,146,025	3,840,810	4,518,386	5,180,253

지원종류와 금액 및 횟수

(<http://www.mokpo.go.kr>)

종류		지원내용	지원금액	횟수	
금전현물지원	위기상황 주급여 A	생계	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304천원(4인기준)	3회(최대 6회)
		의료	· 각종검사,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·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	입원 시 300만원 이내 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)	1회 (최대 2회)
		주거	· 국가-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·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	422천원 (중소도시, 4인기준)	3회 (최대 12회)
		복지시설이용	·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·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	1,450천원 (4인기준/1개월)	3회 (최대 6회)
	부가급여 B	교육지원	초, 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	초(124천원), 중(174천원), 고(207천원, 수업료, 입학금)	1회(최대 2회)
		그밖의 지원	·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· 동절기 (10월~3월) 연료비 : 9.8만원 · 해산비(60만원), 장제비(75만원), 전기요금(50만원이내) : 각1회		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	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		횟수제한 없음	

사업지원절차

- ① 위기상황발생
- ② 신고접수(사회복지과 긴급지원 담당자, 129콜센터)
- ③ 현장확인(담당공무원)
- ④ 지원실시
- ⑤ 사후조사
- ⑥ 적정성 심사(긴급지원심의위원회, 지원중단/비용반환)
- ⑦ 사후연계(민간 프로그램,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)

긴급지원제도 문의 및 신청방법

-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270-8266, 국번없이129
- 신청서류 :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소득확인서, 금융기관 거래내역서, 보험약관 등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